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지방세징수법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행정안전부장관)
제출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공매재산의 매수신청인이 자신에게 배분될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매수대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차액납부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「지방세징수법」이 개정됨에 따라 차액납부 신청 대상과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, 영세채납자의 기초생활보장 강화를 위해 압류금지 대상인 소액금융재산 및 급여채권 등의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압류금지 소액금융재산 등의 기준금액 상향조정(안 제46조 및 제47조)

압류금지 소액금융재산의 기준금액을 사망보험금의 경우 현행 1천만원에서 1천5백만원으로,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·만기환급금의 경우 현행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, 개인별 예금 잔액의 경우 현행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, 압류가 제한되는 급여채권의 금액을 현행 월 185만원에서 월 250만원으로 인상함.

나. 차액납부 제도의 법률 위임사항 규정(안 제85조의2)

공매재산 매수대금 차액납부 신청 대상을 부동산인 공매재산에 설정된 전세권·저당권·가등기담보권 및 등기된 임차권 또는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있는 자로 규정하고 신청 절차 등을 신설함.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입법예고전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호 중 “재산세·가산금”을 “재산세”로 한다.

제5조제3항 중 “지방세정보통신망”을 “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”으로 한다.

제6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“지방세정보통신망(이하 “지방세정보통신망”)”을 “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(이하 “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”)”으로 하고, 같은 호 가목 및 나목 중 “지방세정보통신망”을 각각 “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”으로 한다.

제18조제3항 중 “지방세정보통신망”을 “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”으로 한다.

제30조의2 중 “지방세정보통신망”을 “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”으로 한다.

제36조를 삭제한다.

제37조 중 “과세연도·세목·세액·가산금·납부기한”을 “과세연도·세목·세액·납부기한”으로 한다.

제38조제2호 중 “과세연도·세목·세액·가산금·납부기한”을 “과세연도·세목·세액·납부기한”으로 한다.

제38조의2제3항 중 “지방세정보통신망”을 “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”으로

한다.

제38조의3제2항 및 제3항 중 “지방세정보통신망”을 각각 “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”으로 한다.

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185만원”을 “250만원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“1천만원”을 “1천5백만원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 중 “150만원”을 각각 “250만원”으로 한다.

제47조제2항 중 “185만원”을 “250만원”으로 한다.

제8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5조의2(차액납부 신청인 등) ① 법 제92조의2제1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”란 공매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에 대해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 매수신청인을 말한다.

1. 저당권, 전세권 또는 가등기담보권
2. 대항력 있는 임차권 또는 등기된 임차권

② 법 제92조의2제1항에 따라 차액납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차액납부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8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가산금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) 2024년 1월 1일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분에 대해서는 제2조제3호 및 제36조, 제37조, 제38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.

제3조(압류금지 재산 등에 관한 적용례)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항 제1호·제3호·제4호 및 제4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압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납세증명서) 「지방세징수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 한다.	제2조(납세증명서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· 2. (생략)	1. · 2. (현행과 같음)
3. 「신탁법」 제2조에 따른 수탁자(이하 “수탁자”라 한다)가 「지방세법」 제119조의2에 따라 그 신탁재산으로써 위탁자의 <u>재산세·가산금</u> 또는 체납처분비(이하 “재산세등”이라 한다)를 납부할 물적납세의무가 있는 경우 그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체납한 재산세등	3. ----- ----- ----- ----- -- <u>재산세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4. ~ 6. (생략)	4. ~ 6. (현행과 같음)
제5조(납세증명서 제출의 예외)	제5조(납세증명서 제출의 예외)
① · ② (생략)	① · ② (현행과 같음)
③ 납세자가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	③ ----- ----- -----

제6조(납세증명서의 신청 및 발급) ①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세무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로 신청해야 한다.

1. 납세자의 성명(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말한다. 이하 같다)과 주소, 거소, 영업소 또는 사무소[「지방세기본법」 제2조제1항제28호에 따른 지방세정보통신망(이하 “지방세정보통신망”이라 한다) 또는 같은 항 제31호에 따른 연계정보통신망(이하 “연계정보통신망”이라 한다)을 이용하여 송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

- 7 -

목에 따른 전자우편주소, 전자
사서함 또는 전자고지함을 말
한다. 이하 “주소 또는 영업
소”라 한다]

가. 지방세정보통신망에 가입
된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

나.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전자
사서함[「전자서명법」 제
2조에 따른 인증서(서명자
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
있는 것으로 한정한다) 또
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
하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
있는 인증수단으로 접근하
여 지방세 고지내역 등을
확인할 수 있는 곳을 말한
다]

다. (생략)

2. 3. (생략)

② (생략)

제18조(외국인 체납자료 제공범위
및 절차 등) ①·② (생략)

③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
치단체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
에 따른 외국인 체납자료를 전

가.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---

나.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---

다. (현행과 같음)

2. 3.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제18조(외국인 체납자료 제공범위
및 절차 등) ①·② (현행과 같
음)

③ -----

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체납 자료파일을 작성하여 지방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공할 수 있다.

제30조의2(등록 전 산정보자료의 제공)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등록 전 산정보자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하는 경우 지방세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해야 한다.

제36조(가산금) 법 제30조에 따른 가산금 및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중가산금은 해당 세목의 세입으로 한다.

제37조(독촉장의 기재사항) 법 제32조제1항 본문에 따른 독촉장에는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연도 · 세목 · 세액 · 가산금 · 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를 적어야 한다.

제38조(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최고)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최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.

1. (생략)

-----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-----

-----.

제30조의2(등록 전 산정보자료의 제공) -----

-----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-----.

<삭 제>

제37조(독촉장의 기재사항) -----

----- 과세연도 · 세목 · 세액 · 납부기한 -----
-----.

제38조(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최고) -----
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2.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려는 지방세의 <u>과세연도</u> · <u>세목</u> · <u>세액</u> · <u>가산금</u> · <u>납부기한</u> 및 <u>납부장소</u> 제38조의2(실태조사 대상 및 방법 등) ① · ② (생략)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<u>지방세정보통신망</u>을 통하여 체납자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. ④ (생략) 제38조의3(관리대장의 관리 및 자료제공) ① (생략)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<u>지방세정보통신망</u>을 활용하여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.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라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가 「사회보장기본법」에서 규정한 사회보장정책을 수립·추진하기 위하여 관리대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정리보류된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<u>지방세정보통신망</u>과 연계된	2. ----- ----- <u>과세연도</u> · <u>세목</u> · <u>세액</u> · <u>납부기한</u> ----- ----- 제38조의2(실태조사 대상 및 방법 등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<u>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</u>----- -----. ④ (현행과 같음) 제38조의3(관리대장의 관리 및 자료제공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<u>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</u>----- -----. 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 <u>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</u>----
---	--

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할 수 있다.

제46조(압류금지 재산) ① 법 제40조제14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”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,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과 개인별 잔액이 185만원 이하인 예금(적금, 부금, 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)을 말한다.

1. 사망보험금 중 1천만원 이하의 보험금

2. (생략)

3.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

4. 보장성보험의 만기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

② (생략)

제47조(급여의 압류 범위) ① (생략)

②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서 “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”이란 월 185만원을 말한다.

---.

제46조(압류금지 재산) ① -----

----- 250만원 -----

--.

1. ----- 1천5백만원 -----

2. (현행과 같음)

3. -----
250만원 -----

4. -----
250만원 -----

② (현행과 같음)

제47조(급여의 압류 범위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 250만원-----.

③ (생략)

<신설>

③ (현행과 같음)

제85조의2(차액납부 신청인 등)

① 법 제92조의2제1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”란 공매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에 대해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 매수신청인을 말한다.

1. 저당권, 전세권 또는 가등기담보권

2. 대항력 있는 임차권 또는 등기된 임차권

② 법 제92조의2제1항에 따라 차액납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차액납부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5 - 3813